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5.9일까지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 중인데 5.9일까지 허가받으려면 허가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, 4.15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매물 출회를 위해 5.9일 이내 허가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및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기한 변경 (현행 제14조의2 수정)”

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, 해당 기간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10. ~ 4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”를 “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의2(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)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.		제14조의2(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~ 4. (생략)	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07